



기본과제 2020-17

직불제 개정에 따른 충북 농업의 영향 분석

○ 우장명 수석연구위원

CRI
2020

CRI 충북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Contents

제 I 장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제 II 장 직불제 운영과 성과 분석	5
1. 직불제의 도입과 운영	5
2. 직불제의 제도적 분석	11
3. 직불제의 성과	19
제 III 장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안	22
1.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	22
2. 직불제 제도의 개편안	27
3. 개정된 직불제 법률	30
4. 개정된 시행령 내용	44
제 IV 장 충북 농업의 직불제 현황과 향후 과제	46
1. 충북의 직불제 현황	46
2. 충북 농업의 향후 과제	57
제 V 장 결론	62
참고문헌	64
부록	66

표 차례

〈표 II-1〉 UR 농업협정문에 따른 국내보조의 분류	6
〈표 II-2〉 농업직불금제도의 개념에 따른 이론적 근거	7
〈표 II-3〉 기존 농업직불금 제도의 정책 개요	8
〈표 II-4〉 직불제별 목적 및 근거 법령	10
〈표 II-5〉 개정 이전 직불제 개요	15
〈표 III-1〉 제시되었던 직불제 개편안(2016~2018년)	29
〈표 III-2〉 직불제 개편 전과 후의 모습	32
〈표 III-3〉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7개 항목	40
〈표 III-4〉 면적 직접지불금의 기본면적 구간별 단가	42
〈표 III-5〉 농업진흥지역 논밭 4ha, 비진흥지역 논 3ha, 비진흥지역 밭 2ha일 경우	43
〈표 III-6〉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44
〈표 III-7〉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45
〈표 IV-1〉 충북의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 지급 현황	47
〈표 IV-2〉 충북의 쌀고정직불제 지급 현황	48
〈표 IV-3〉 충북의 변동직불제 지급 현황	49
〈표 IV-4〉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기준 완화 내역	50
〈표 IV-5〉 충북의 조건불리직불제 지급 현황	50
〈표 IV-6〉 충북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 현황	52
〈표 IV-7〉 충북의 밭농업직불제 지급 현황	53

그림 차례

〈그림 II-1〉 직불제 시행기관간 업무구조	11
〈그림 III-1〉 법률에 근거한 직불제 개편 모습	33
〈그림 III-2〉 준수사항 설정과 기대효과	37

제 I 장 서론

1. 연구 배경

- 직접지불제는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 보상, 농업구조조정, 농업정책 개편에 따른 보상,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등을 위하여 도입되었음(김용렬 2018)
 - 1997년에 경영이양직불제가 처음 시행되었고, 2012년에는 농업직불제가 도입되어 현재 9개의 직불제가 운용되고 있음(김태훈 2018)
 - 2017년 직불제 예산은 약 3조 6,000억 원, 2018년 약 2조 2,500억 원, 2019년 1조 4,000억 원, 2020년 2조 1,995억 원임
 - 농지를 기반으로 하는 쌀 고정직불제, 쌀 변동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특수목적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직불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FTA 피해지원직불제 등이 있음
 -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FTA 피해지원직불제는 2025년 이후 종료될 예정임
- 직불제를 실시한 목적은 농정 방향이나 직불제 유형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으나, 공통된 특성은 농가소득 증대를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음¹⁾

1) 이용기, 공익직불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오피니언, 농민신문, 2020. 3. 18.

- 하지만 정책 전환 및 시장개방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뒷을 보전해주려고 한 것이 직불제를 도입한 이유이나, 소득안정에 미친 효과가 별로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직불제를 도입한 목적과 시행방식의 어긋남, 직불금 지원의 형평성 저하, 도입된 직불제간 역할의 불명확성, 직불제가 쌀 품목에 편중, 구조조정을 저해할 가능성, 농가가 의무이행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 등과 같은 문제도 나타나고 있음(유찬희 2016)
- 공익직불제는 재배하는 작물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해 중소 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확대하고 준수의무를 강화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핵심임(정영일 2020)
 - 쌀과 대농에 편중된 직불제는 쌀의 과잉 생산의 심화와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시작됐음

○ 2019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의 세부 금액과 기준 등을 담은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이 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음²⁾

○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서 소외되거나 밀렸던 중소규모 농가들, 특히 빈농, 겸업농, 토지 없는 농가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임
 - 공익형 직불제는 그동안 농업 생산 과정에서 역할이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소규모 임차농과 겸업농, 빈곤농가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 생산과 농촌 발전에 참여하게 하여 각자가 지닌 역량을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둘째, 농업과 농촌 발전의 성과를 일반 국민들도 누리게 하려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이 요구된다는 것임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17, 2020, 4. 27.

- 농업·농촌이 국민과 분리되고 농촌지역이 소외되는 현상을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농촌지역에 손쉽게 올 수 있어야 하고, 농촌에서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함
- 농업생산 과정에서 훼손된 농촌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자원들을 복원하는 활동 즉,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지원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공공재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째, 국민들이 농업과 농촌에서 누리면서 지불하는 대가가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공익형 직불제가 필요함
 -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쾌적한 환경을 이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이 농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활동을 하게 되면, 농촌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으로 연결되어 농촌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돌아올 것임
 - 즉, 농촌지역의 사회적, 환경적 개선 활동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하면 농촌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 추가 지원이 없어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으로 바뀌게 될 것임

2. 연구 목적

- 개정된 직불제가 충북 농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직불제의 도입과 운영, 성과, 개편된 법률, 시행령 등을 분석하여 향후 직불제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제Ⅱ장 직불제 운영과 성과 분석

1. 직불제의 도입과 운영

- 1994년에 타결된 UR협상으로 가격지지정책, 생산요소정책과 같은 감축대상 보조금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의 한도가 설정되고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게 되었음(김태훈, 2017)
- UR 농업협정문에는 감축대상 보조금은 줄여야 하지만 농업과 생산자를 지원할 수 있는 허용보조 규정도 마련되어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음
 - 허용보조(green box)에 속하는 이탈농 지원(경영이양직불제, 1997), 환경농업 지원(친환경농업직불제, 1999), 조건불리지역지원(조건불리지역직불제, 2004), 생산증립적 소득보조(논농업직불제, 2001) 등 관련 직불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됨
 - 2002년에는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쌀소득등보전직불제(쌀 고정, 쌀 변동)로 개편되었고, 2004년에는 FTA피해보전직불제와 FTA폐업지원제가, 2005년에는 경관보전직불제, 2012년에는 밭농업직불제가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표 II-1〉 UR 농업협정문에 따른 국내보조의 분류

보조형태	분류	관련규정	관련정책	비고
광의의 직불제	허용대상 (협의의 직불제)	부속서 2의5-13항 (green 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증립적 소득보조 • 재해보상지원 • 이탈농 지원 • 조건불리지역 지원 • 환경농업 지원 등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불제 (관련 조건을 만족해야 함)
		6조 5항 (blue box) 6조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제한하 직접직불 • 개도국의 농업투자 	EU의 보상지불제 농업 및 농촌개발 투자
	감축대상	6조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재보조 등 일반적 소득 보조 	최소허용보조 (de-minimis) 비율 내에서 보조는 허용(협정문 6조4항)
간접보조	감축대상	6조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지지 등 	
	허용대상	부속서 2의 2-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지도 등 일반서비스 정책 • 식량안보 비축제도 	

자료: 김태훈·김선웅·김종인·박지연(2017),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13쪽.

- 경영이양직접지불제(1997년)는 농업경영을 넘기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꾀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여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친환경농업직불제(1999년)는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의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친환경 안전 축산직불은 2009년에 도입되었음
- 조건불리직불제(2004년)는 농업생산과 정주요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경지율과 경지 경사도를 고려하여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였음
- FTA피해보전직불금과 FTA폐업지원(2004년)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농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 논농업직불제(2001년)는 농가소득 안정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2005년에 논고정직불제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변동직불제로 개편되었음
 - 경관보전직불제(2004년)는 도농교류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작물을 가꾸면서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밭농업직불제(2012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업피해 대책으로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음
- 농업직불금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시장실패, 공공재, 분배정의, 외부효과 등임(이관률 2015, Tangermann 2011)
- 시장 실패는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공공재는 식량과 물, 토양, 공기 등과 같은 필수재를 농업과 농촌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고, 분배 정의는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소득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음

〈표 II-2〉 농업직불금제도의 개념에 따른 이론적 근거

		근거			
		시장실패	공공재	분배정의	외부효과
개념	협의	○	×	△	×
	광의	×	○	○	△

자료: 강마야·이관률(2015), 앞의 책, 149쪽.

-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 program)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공공재정으로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음 (강마야·이관률, 2015)3)
- 정부지원에 의한 생산과 소비, 무역에 대한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하는 정책방식이며, 생산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불하는 정책수단으로 시장을 이용한 전통적인 가격지지정책과 차이가 있음
- 농업직불금은 좁은 개념(direct payment)과 넓은 개념(payment)으로 구분하고 있음

3) 강마야·이관률, 농업직불금 제도의 정책구조와 집행분석: 충남지역을 사례로, 농촌사회 25(2), 2015, 148쪽.

- 좁은 의미의 농업직불금은 정부가 시장가격지지정책을 직접적인 소득정책으로 바꾸면서 발생되는 소득감소분을 농업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임 (OECD, 2006)
 - 넓은 의미의 농업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이라는 공공재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농업인의 활동에 대하여 현금으로 직접 보상하는 제도임 (허남혁·강마야·김종화·이관률·여민수, 2013)
- 제도 개편 이전의 농업직불금은 WTO 유형 기준에서 모두 허용보조로 분류되고 유형 분류로 볼 때 4개의 직불금 제도가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넓은 의미의 공익형 직불제로 볼 수 있음⁴⁾
- 경관보전직불을 제외한 5개의 직불제는 소득안정·소득감소분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소득보전형 직불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II-3〉 기존 농업직불금 제도의 정책 개요

구분	경관보전직불	경영이양직불	밭농업직불	쌀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 농업직불
WTO 유형기준	허용보조	허용보조	허용보조	허용보조	허용보조	허용보조
정부 유형분류	공익적 기능 제고	구조개선 촉진	소득 안정	공익적 기능 제고	공익적 기능 제고	공익적 기능 제고
사업목적 수	2	2	2	2	2	3
사업목적 ①	경관 유지 및 개선	소득 안정	소득 안정	소득 안정	소득 보전	소득감소분 보전
사업목적 ②	지역경제 활성화	영농규모화 촉진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적 가치 도모	지역사회 활성화	친환경농업 확산
사업목적 ③	-	-	-	-	-	공익적 기능 제고
지원대상	농업인, 마을	농업인	농업인	농업인	농업인, 마을	농업인
법적 근거 수	4	3	4	1	5	3

자료: 강마야·이관률(2015), 앞의 책, 157쪽.

4) 강마야·이관률, 농업직불금 제도의 정책구조와 집행분석: 충남지역을 사례로, 농촌사회 25(2), 2015, 156쪽.

○ 직불제는 여러 가지 법률에 기초를 하고 있어 제도의 운용 목적이 다양함

- 직불금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쌀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이 목적임
-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그리고 경영이양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이하 WTO 특별법)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 FTA 협정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보전하기 위한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표 II-4〉 직불제별 목적 및 근거 법령

	목적	근거 법령
쌀소득보전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소득법 제3조
경영이양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등 농업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5호 기본법 제 39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 시행규정 제4조 등
친환경농업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특별법 제11조 제2항 시행 규정 제16조 ~ 제23조
조건불리지역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특별법 제11조 제2항 기본법 제39조 제3항 삶의 질 특별법 제40조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의 2의 13 시행규정 제4장
경관보전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특별법 제11조 제2항 시행규정 제5장 삶의 질 특별법 제30조 기본법 제44조
FTA피해보전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피해 품목의 생산자 경영안정과 피해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특별법 제6조
밭농업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법 제17조 무역특별법 제11조 제2항 농업소득법 제4조 시행규정 제5장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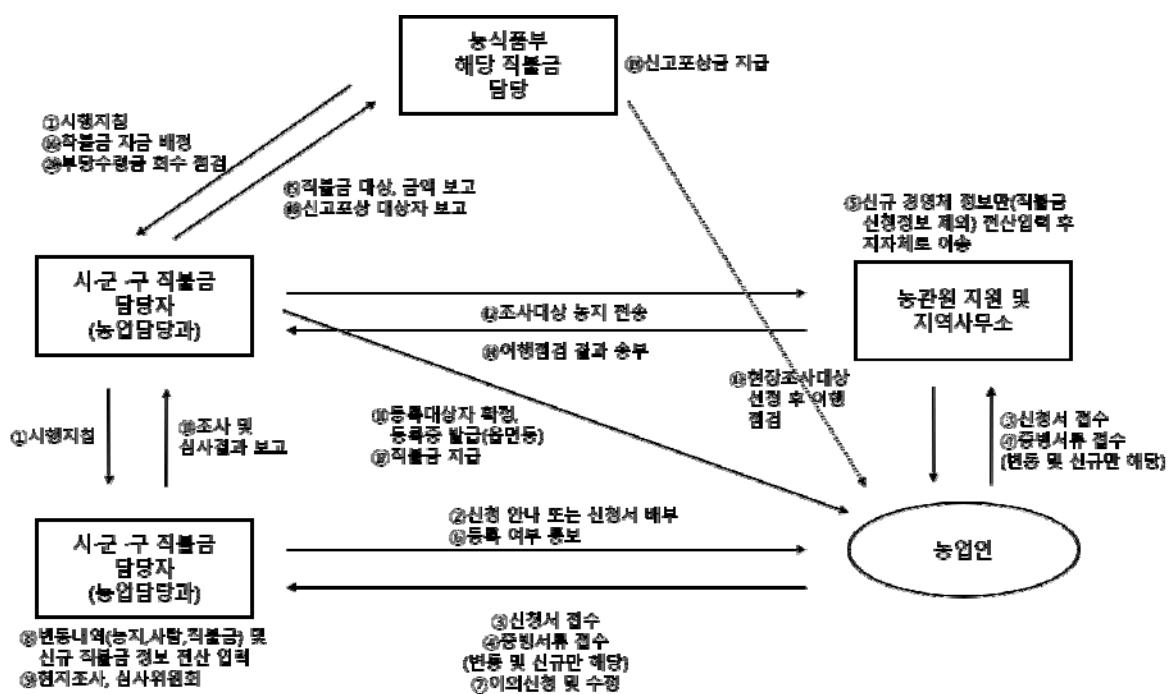
주 1) 직불제별 사업 대상자 제외 규정은 표시하지 않았음.

2) 농업소득법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무역특별법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 기본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정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삶의 질 특별법은 농어업인 사람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소득보전법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친환경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미함.

자료: 유찬희 외 3인,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21~22쪽.

2. 직불제의 제도적 분석

- 쌀 직불제 이행 실태 점검 대상은 지자체 이행 점검 요청 농가 중 표본으로 선정된 농가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행 점검 요청 농가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시·군 단위로 50%를 표본 농가로 선정하되,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 위주로 선정하고 있음(김태훈, 2017)
- 직불제 관련 업무는 주로 농식품부에서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구청에 시달하고 이를 읍·면·동의 직불금 담당자가 농업인에게 전달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며 세부적인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그림 Ⅱ-1〉 직불제 시행기관간 업무구조

■ 개편하기 전에 시행되었던 직불제의 문제점

- 첫째, 현실적으로 농민의 부담과 책임이 신청과정에서 거의 없음

- 신청자격의 검토, 경작자 증명 여부, 농법 적용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이 대부분 신청자의 부담과 참여하에 이루어지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읍·면·동의 직불금 담당자나 이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체계임

○ 둘째, 신청자격이나 지급 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매우 약함

- 부정신청의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어 기존 신청자격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도 다시 신청하는 사례가 많고, 농지의 형상 유지에 대한 지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보조금 환수 및 벌금부과 등의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점검은 농진청이나 농관원에서 하지만 처벌은 시·군·구청에서 하여야 하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셋째, 이행 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일회성 임시직 고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농관원에서 매년 1,2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700여 명 정도를 임시직으로 약 10개월간 고용하여 점검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과 장비 사용 및 보고방식에 대한 교육에 한정돼 있음
- 사업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점을 경험에 의해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반영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점검뿐 아니라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음

1) 소득보전형 직불제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가격지지를 철폐하고 양정을 개혁하는 전환 과정에서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FTA피해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는 FTA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을 위하여 도입하였음

- 쌀변동직불제의 목적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려는 것보다는 정책이 바뀌면서 발생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어서 소득 안정의 의미가 약함
 - 소득 보전 방식을 면적비례로 한 것도 손실이 클수록 많은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며, 변동직불제는 수확기 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있으나 소득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목표가격과 농가수취가격(또는 조수입)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농가에게 생산 유인이 되어 조건이 같다면, 생산이 증가하여 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상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
- 밭농업직불제는 소득보전형보다는 공익형직불제의 목적과 더 일치하여, FTA 피해보전 직불제 목적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음
- FTA피해보전직불제에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라는 표현은 의미가 불분명 하여 경영안정과 소득안정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음
 - 면적비례 지급방식은 경지규모가 클수록 직불금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 경지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직불금이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꾀하지 못하여 농가간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음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특정 품목이 제도 명칭에 사용되고 있고 쌀소득보전직불제에 예산이 집중되어 다른 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한하고 있음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면 쌀고정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을 해도 지급이 되지만, 쌀변동직불금 제도는 고정직불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고 대상 농지에서 물을 이용하여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쌀 이외의 작물을 생산하게 하는 유인이 줄게 됨
 - 휴경이나 전작을 하면 규정상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쌀 이외의 작목으로 전환할 유인이 줄어들게 됨
 - 쌀고정직불금 단가가 밭농업직불금 단가(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 직불금)보다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에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 유인 효과가 더욱 낮아지고, 쌀에 예산이 집중되므로 다른 직불제를 운용하는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밭농업직접지불제도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와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지급 단가의 적절성, 대상 품목과 농지의 적정성 등이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음
 - 규정상 밭농업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같은 필지에서 중복 수령

할 수 없음

- 밭농업직불금 단가는 논이모작직불금을 포함해도 쌀소득보전직불금보다 낮아, 밭작물의 단위면적당 노동투입 시간이나 생산비용이 논에 비해 대체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FTA피해보전직불제도는 가격지지율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며, 가격지지율이 소득 지지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가격에 포함되는 수입기여도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2) 공익형 직불제

- 공익형 직불제는 다원적 기능⁵⁾과 연계되어 있는데, 직불제별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개별 직불제가 제시하고 있는 수단과 목적들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그리고 쌀고정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복수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문제를 보이고 있음
 - 쌀고정직불제는 쌀변동직불제의 목적과 상충될 수 있는데, 쌀고정직불제의 식량 자급률 제고는 쌀 자급률 달성을 같은 거의 같은 의미이며, 쌀변동직불제와도 연동되어 있어 쌀 이외의 작목을 재배할 수 있게 할 동기가 낮음
- 쌀고정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는 긍정적 외부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영농활동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음
 -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다원적 기능을 지닌 영농활동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다원적 기능으로 이끌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며, 지원자금도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개별 사업 위주여서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을 조성 또는 유지하거나 개선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나 직불금이 보조금으로 인식되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5) 농지의 사회적 편익과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지역 활성화, 경관 형성 및 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농촌 경관을 가꾸는 것이지만 작물 재배에 한정하고 다른 관리 수단은 명시되지 않아 비슷하거나 관련이 있는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이 부족함
 - 마을경관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주민 역량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역량을 축적하거나 참여하는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음
-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 생산성이 낮고 지역의 여건이 불리한 곳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지역을 활성화하여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음
-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작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대상 면적에 비례하여 개별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지역의 생산 여건과 불리한 정도와 상관없이 지원 조건과 금액이 모두 같고, 농업 활동을 전제로 하지만 농업 활동을 하지 않아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고, 보조금 중 20% 이상을 마을 공동자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여 실제로 받게 되는 직불금이 작아지는 문제가 있음

〈표 II-5〉 개정 이전 직불제 개요

종류(도입 연도)		대상 농지 및 대상자	지원 단가
쌀 소득보전 직불제 ("05")	고정 직불	1998~2000년 사이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경작자	100만 원/ha(2016년 기준)
	변동 직불	벼 재배농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 차액의 85% 보전하고 고정직불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금액을 지원
경영이양직불제 (1997)	대상자: 65~74세,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농업인 대상 농지: 진흥지역 내 전·답·과수원, 진흥지역 밖 경지 정리된 전·답·과수원 등으로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월 25만 원/ha 지급 (2~10년 지급)
친환경농업직불제 (1999, 축산 2009)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농가 (축산의 경우 HACCP) 지정 농가에 한함		〈농업〉 논: 유기 60만 원/ha, 무농약 40, 유기지속 30 밭: 유기 120만 원/ha, 무농약 100, 유기지속 60 〈축산〉 한우: 유기 17만 원/두, 무항생제 65 돼지: 유기 16만 원/두, 무항생제 6

종류(도입 연도)	대상 농지 및 대상자	지원 단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004)	대상 지역은 육지지역의 경우 읍·면의 경지율이 22% 이하이면서 경지경사도 14% 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읍·면의 모든 법정리 2003~2005년간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단, 쌀 고정직불제 대상 농지 제외)	농지: 55만 원/ha 초지: 30만 원/ha (국비 80%, 지방비 20%)
경관보전직불제 (2005)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경관작물: 170만 원/ha 준경관작물: 100만 원/ha 마을경관보전활동비: 15만 원/ha (국비 50%, 지방비 50%)
FTA피해보전 직불제 (2004)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사후지정으로 수입량 기준과 가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대상품목으로 선정)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 가격 중 최저치와 최고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
FTA폐업지원제	사후지정으로 수입량 기준과 가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대상품목으로 선정	과수, 축산 등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 간의 순수익을 폐업지원금으로 지원
밭농업직불제 (2012)	밭고정: 지목과 상관없이 2012~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논이모작: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 재배한 농지	45만 원(밭고정), 50만 원(논 이모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 박준기 외(2016: 21)에서 재인용.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쌀 직불제는 관련 예산이 가장 크며, 논에 벼를 재배하면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이 됨
 - 지급조건을 보면 고정직불은 농지의 모양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 요건에 더하여 벼를 생산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함

- 밭농업직불제의 밭고정직불제는 지목을 따지지 않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논(겨울)이모작 직불제는 쌀 고정직불금 대상 농지와 1998년 이후에 만들어져 겨울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지가 대상임
 - 지급 상한은 농업인 4㏊, 농업법인 10㏊(논 이모작은 쌀 직불과 같음)이며, 지급 조건은 농지의 형상과 유지임
- 친환경농업직불제에서 저농약인증은 폐지되고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직불금만 지급됨
 -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행조건을 따랐는지를 점검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자임
 -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0㏊, 축산은 유기 3,000만 원, 무항생제 2,000만 원임
 - 지급기간은 무농약은 최초 지급년도부터 3년간, 유기재배는 5년간, 유기지속 직불은 추가로 3년 동안 지급함
-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과 농지에 지급되는데, 쌀 고정직불금, 쌀 변동직불금, 밭농업직불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음
 - 지원대상은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의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읍·면지역 법정리 내의 농지와 초지이며 도서지역은 모든 법정리 내의 농지 및 초지임
 - 지급된 직불금의 2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 활성화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지급대상 농지를 최소한의 생산 또는 연 1회 이상 경운 등으로 농지기능을 유지해야 함
-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한 농지와 경관작물 식재 면적이 마을 단위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집단화 최소면적은 경관작물 2㏊ 이상, 준경관작물 10㏊ 이상이며, 대상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임
 - 경관보전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과 농민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해야 함

-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가격 요건과 총 수입량 요건, 수입량 요건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 지급함
 - 가격 요건은 해당 연도 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임
 - 총 수입량 요건은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 총 수입량보다 많은 경우임
 - 수입량 요건은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당해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늘어 났을 때를 의미함
 -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당해 평균 가격간 차액의 95%를 지원하고, 지급액 산정은 수입 기여도를 고려한 조정계수를 적용하며,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임
- FTA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면 지원 대상이 됨
 - 지원조건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이면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품목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 토지, 입목 등을 철거·폐기할 때임
 - 재배·사육 등에 대한 투자 비용이 큰 품목이어서 폐업하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가 곤란한 품목
 -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재배·사육 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
 - 기타 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임
 - 지급액은 가철거·폐기면적과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의 3년치를 지원함

3. 직불제의 성과

1) 소득보전과 안정 효과

■ 대부분의 직불제는 농가소득의 안정과 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는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임
 - 직불금 예산의 80.8%를 차지하는 쌀 직불제는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지지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논벼농가소득을 지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⁶⁾
-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제는 FTA 해보전직불제 등임
-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부문에서의 고정자본 형성과 생산량, 그리고 농가 소득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줄어들면 고정자본의 형성이 감소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10% 이상으로 줄었으며, 농가소득 마찬가지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친환경농업의 비중을 고려해 보면 전체 농업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연도별로 발동과 지급대상 품목이 달라질 수 있음
 - 2016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은 당근, 포도(노지, 시설), 블루베리였으며, 이중 블루베리의 소득보전효과는 19.3%로 높게 나타났으나 노지포도와 시설포도, 당근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2) 구조조정 효과

- 개정 이전에 운용된 직불제 중 경영이양직불제와 FTA 폐업지원제는 농업구조를 조정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음

6) 김태훈·김선웅·김종인·박지연(2017),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9쪽.

- FTA 폐업지원제는 연도별로 활동과 지급대상 품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품목의 누적효과를 계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김태훈, 2017)
 - 2016년 기준으로 FTA 폐업지원을 한 결과를 보면, 노지포도는 농가당 평균 재배 면적이 3.0% 증가, 시설포도는 평균 재배면적 이상의 농가가 다수 참여하여 호당 재배면적이 2.9% 감소, 블루베리는 지원 후 호당 평균 재배면적이 0.8% 감소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FTA 폐업지원제의 지원 대상이 되는 농가나 품목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대상 품목이 바뀌므로, 농업 전체로 볼 때 지원면적이나 농가 수가 적어 농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경영이양직불제는 농지를 넘겨받는 전업농의 규모 확대와 고령 은퇴농의 소득 보전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⁷⁾
 - 경영이양을 받은 전업농 기준으로 보면, 전업농 1인당 1.05㏊의 영농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면적과 혜택받은 농가와 지원액을 보면 미미한 수준이며 농업 전체로 보면 구조조정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음
-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이양직불제와 소득보전형 직불제(예: 쌀 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등)는 정책 효과가 상충되는 문제가 제기(김정호, 2004; 사공용, 2007; 이태호 2009)되고 있음
- 소득보전형 직불제를 바탕으로 한계농가가 농업생산을 지속하게 되어 경영이양 직불제의 시행 목적인 농업 구조개선이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 있음

3) 공익적 기능 제고

-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경관 작물을 재배하고 마을 경관을 보전하는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여 지역축제와 농촌관광 등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목적임
- 경관보전직불제는 2005년 시범사업 470㏊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16,600㏊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2016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184쪽.

까지 사업면적이 늘어났다가 감소 추세로 바뀌었음

- 사업대상 농지와 지급대상, 사업예산 등도 제한이 있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개선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면적은 2010년 93,319㏊로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로 감소세로 2014년에는 25,383㏊로 축소되었음
-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친환경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였으나 직불금이 지급된 면적이 작아 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기능 제고 효과는 별로 없던 것으로 보임
- 공익형 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불제)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직불금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3.5% 수준(2017년 예산 999억 원)이어서 농업 전체로 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고라는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식량안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쌀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는 환경 보전을 위한 의무이행사항 수준(농지형상 유지)이 낮아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 쌀 고정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고정)는 의무이행 사항에 비료나 농약 사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농업생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쌀 변동직불제는 비료와 농약사용량 기준이 의무이행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나 모니터링과 관련된 비용이 너무 비싸 점검 시행률이 낮고 해당 의무이행사항의 강도도 낮음

제III장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안

1.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

- 직불제가 도입되고 제기된 문제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소득보전형 직불제의 유효성, 직불제 실시로 생긴 영향, 직불제의 구조조정 효과 저해 가능성, 다원적 기능과 공익형 직불제의 유효성, 직불제 제도의 설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⁸⁾
 - 소득보전형 직불제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 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농가들이 받는 소득보전형 직불금이 농가소득 안정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지급의 기본 요건과 제시하는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어서 대다수 농가가 받고 있음
 - 직불제가 생산중립성(decoupling)을 저해한다는 것으로 시장 왜곡, 시장 가격의 불안정, WTO 규정 위반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부채지주에게 귀속되어 농지 유동화를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음
 - 직불제는 생산부문에 한계농가가 남게 되는 효과를 가져와 구조화 정책(특히 쌀)에 걸림돌이 되어 쌀 농업구조 조정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임

8) 유찬희 외 3인,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52~59쪽 요약.

- 공익형 직불제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제도 설계도 명확하지 않아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고, 다원적 기능의 공급도 논의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임
- 직불제끼리 또는 직불제와 다른 정책들과 겹치거나 어긋나는 영역이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으로 농가소득보전정책과 농업구조조정정책이 지닌 한계라고 볼 수 있음
-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직불제의 예산 대부분이 쌀소득보전직불제에 집중되어 있고, 현행 면적비례 지불 방식은 소득재분배의 역진성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쌀변동직불제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활동조건이 까다로워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1)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 지원정책은 쌀에 편중되고, 벼농사의 기계화와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쌀 생산으로 인한 공급과잉과 재고처리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쌀 이외의 식량작물은 생산량이 적어 토지와 노동 등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된 풍년으로 쌀값이 떨어져 WTO에서 정한 감축대상보조액의 상한까지 지급하게 되어 쌀 변동직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해졌음
- 쌀 직불금제도가 지닌 생산 유인, 농업지원의 비효율적 배분, AMS 한도에 따른 쌀 변동직불금 지급 등으로 쌀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직불제 전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 사회적 수요 반영 미흡

- 최근 국민들은 농업의 기능 중 가장 중요했던 식량생산 기능은 물론 안전한 식량의 생산 및 환경보전 기능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나 직불금 제도의 의무이행사항은 농지의 기본적인 형상 유지이어서 환경이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환경보전 기능이 강화된 직불제의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의무이행사항에

반영시켜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에 관한 점검이 요구됨

- 농촌경관, 환경보전 등과 같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불제의 비중이 낮아 사회적 요구에 맞게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OECD(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단위면적당 농약과 비료 사용량이 증가하여 농업 환경이 더욱 나빠지는 상황임(이상훈, 2019)

- 우리나라의 총 질소수지 지표는 1990~1992년 연평균 215.2kg/ha 이었으나 2007~2010년에는 연평균 226.4kg/ha 로 증가하여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해당 수치는 OECD 평균치인 61.5kg/ha 에 비해 3.7배 높은 수준이며 비슷한 농업 여건을 가진 일본(180.2kg/ha)과 비교해도 1.3배가 높음
- 우리나라의 인산염(Phosphates) 비료 사용량도 2012년 기준 119kg/ha 로 같은 시기 OECD 평균(8kg/ha)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높은 수준임

○ 과도한 비료 사용은 토양의 부영양화와 수질오염은 물론 작물 영양의 불균형과 작물의 면역력 약화로 농약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함

3) 직불제 도입 목적과 기대효과의 상충

○ 직불제의 목적은 관련 법령이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제시되어 있으나 제도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불분명함(김태훈, 2017)

- 쌀 고정직불제는 ‘식량자급률 제고’가 목적이지만 쌀 생산은 과잉이며 다른 식량 작물의 생산을 제한하여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
 - 또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하여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농지의 ‘사회적 편의’이 분명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의무 이행사항 수준이 낮으며 사회적 편익과의 연계성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임
- 친환경농업직불제와 관련된 친환경 농업 기준이 ‘투입재의 억제’에 한정되어 있고, 영농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환경자원조성의 목표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주장도

있음(김태연·김배성, 2016)

-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경관을 가꾸기 위한 것이나 작물을 재배하는 것 말고는 다른 관리 수단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부족한 실정임
 - 해당 지역의 자연 조건이나 인적 특성에 의한 활동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 농지와 작물만을 규정하고 있음
 - 방문객 증가율은 직불금과 관련된 요인보다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어 성과지표로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됨
-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가 도입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직불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면서 제도들끼리 목적이나 기대효과가 서로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
 - 쌀직불제와 경영이양직불제의 목적과 효과가 서로 어긋나고, 밭농업직불제의 시행과 단가 인상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령한 조건불리지역직불금에서 마을분담금 20%를 제외하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실제 실수령액이 44만 원/㏊이어서 2015년에 인상된 밭농업직불제의 단가 45만 원/㏊보다 낮고 중복 지급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임(김태훈, 2017)

4) 직불제 운용에서의 문제

○ 임대인이 직불금을 대리수령하는 경우

- 농지 임대차가 이루어지면 입법 취지에 따라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직접지불금을 받아야 하나, 임대인인 지주가 직접지불금을 받는 경우가 있음
 - 농지를 임대차할 때 서면계약을 꺼려 임차인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사동천, 2010)
 - 지주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서면계약을 꺼려 이를 피하면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아니라 지주가 직접지불금을 받는 경우가 일어남

- 농지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지주는 소유농지에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농지를 임대하는 지주들이 서면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뿐만 아니라 쌀소득직접지불금도 실경작자에게 가지 않고 지주가 직접 수령하는 사례가 있게 됨
 - 현행 농지법상 서면계약을 강제할 수단은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실경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실제로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긴 하지만 임차료가 올라 직불금의 일부가 임대인에게 귀속되면,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아도 농지임대 수요 증가로 임차료가 오르게 되면 직불금의 일부가 지주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생김
- 직불제가 임차료를 상승시켜 직불금의 일부가 지주에게 돌아가게 되면, 그만큼 생산소득이 감소하여 직불제의 소득 보전 기능이 저해됨(김관수·안동환, 2006)
 -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이 높을수록 쌀값은 떨어져 임차료가 하락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소득보전분의 일부가 지주에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함(김관수·안동환·이태호, 2007)
- 모니터링의 비용과 실효성 문제
- 모니터링이 잘 되려면 적정한 수준의 이행 점검 대상 농가 선정과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관련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어야 함
 - 쌀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는 농지의 형상 관리 점검, 토양검사, 잎 분석,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는데, 농지의 형상 관리 점검 이외의 검정에 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2. 직불제 제도의 개편안

1) 개편의 기본 방향

- 직불제가 쌀 중심의 정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곡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개편 방향은 아래와 같음
 - 첫째, 품목단위에서 농지단위로 직불제의 접근 방식을 바꾸어서 쌀에 편중된 자원이 다른 작물로 적절히 배분되게 논과 밭의 직불금 단가 차등을 줄여야 함
 - 둘째, 공익적 기능을 확충하여 농업·농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게 바꾸어야 함
 - 관행 농업이 주는 환경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지관리직불제에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의무이행사항을 강화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목표도 다양한 직불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순화 하여 정책 목표들의 일치성을 높이고 역할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넷째, 식량 공급 과잉,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소비자의 인식 변화 등 달라진 여건에 맞추어 직불제의 목적과 지급, 의무이행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임
 - 다섯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농업인 등 주체별로 맡을 일을 확실하게 하고 의무이행사항을 따르고자 하는 가능성, 관련 비용 등을 분석하여 제도 운영과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쳐져야 함
-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를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는 농업계 안팎에서 꾸준하게 나왔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익형 직불제(이하 공식 명칭인 공익직불제)로 고치려는 논의와 추진이 본격화되었음⁹⁾
 -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유지는 물론 사회적·환경적 측면까지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농업·농촌의 역할을 다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한 핵심 정책 수단인 직불제를 고쳐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9) 김태훈 외 2인, 공익직불제 어떻게 개편되나?, 2020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76-77쪽 요약.

- 쌀 농가의 소득 문제 완화에 직불제가 긍정적이었으나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 형평성의 악화, 품목들끼리의 지원 불균형 등의 문제가 나타났음
 - 변동직불제가 쌀 생산 증가의 동기가 되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고착되었다는 비판이 있고 더욱이 2016년산 변동직불금이 WTO 감축대상보조금(Aggregate Measurement Support: AMS) 한도를 넘어서면서(실 지급액은 1조 4,898억 원) 기존의 직불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음(이명기 2020)
 - 쌀 중심의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설정한 목표가격보다 하락하면 하락분의 85%를 보전해 주는 것이나 그동안 쌀값이 떨어져도 농가수취가격은 목표가격의 95% 이상을 유지하여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왔음
- 공익직불제로의 개편은 시장개방과 제도 개편 등에 따른 피해보전과 소득보전을 기본 목적으로 한 기존의 직불제를 쌀 수급불균형과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농업·농촌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공익증진 활동도 보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임

2) 직불제 구조 개편안

-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 농업정책 개편에 대한 보상이 주요 목적이었던 직불금 지급은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의 역할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려면 환경보전 기능이 강화된 직불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의무이행사항에 반영시켜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직불제는 공공 부문에서 경제적·재정적 유인을 제공하여 생산주체가 영농활동 과정에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더 많이 제공하거나 부정적 외부효과를 더 적게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김태훈, 2018)
- 직불제의 지급은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는 현재 주어진 여건에 따라 농업생산을 지속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부정적 기능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임

〈표 III-1〉 제시되었던 직불제 개편안(2016~2018년)

구분	체계(안)	주요 내용
강마야(2017)1)	기본형+선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은 소득보전, 식량주권 등(기본형), 공공재 서비스 대가 지급(선택형)으로 설정 일정경지면적 이상부터 단가 차감 상호준수조건 적용
박분기 외(2016)2)	기본형+선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고정·밭농업직불제를 (가칭)농지관리직불제로 통합하여 품목 단위에서 농지 단위로 전환 준수사항 강화
친환경농업직불제3)	기본형+ 목적특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재 성격을 지니는 환경 및 생태 보전 활동과 관련 규제를 보상하는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지역별 차이를 반영한 포괄지원 및 자치관리방식 도입, 주민협력제 중심운용, 가시적인 평가 지표 적용 농지 형상 및 기능 보전·농약 및 비료 투입량 감축 등 이행조건 준수 전제
이정환 외(2017)4)	공익형직불(기본+ 목적특정형)+가격 변동대응직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변동직불제와 FTA피해보전직불제를 통합한 가격변동대응직불제 도입 필요성 강조 농지 형상 유지, 토양 침식 방지, 비료 및 농약 적정 사용 등의 조건 부과 생산 중립성 강화, 시장 격리 원천적 차단
김태훈 외(2018)5)	기본형+선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고정·쌀변동·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기본 공익형 직불로, 친환경 농업·경관보전직불 그리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내의 직불성 활동을 부가 공익형 직불로 통합, 교차준수 설정 근거와 구체적 내용(안) 제시
대통령 직속 정책6) 기획위원회(2018)	기본형+선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고정, 쌀변동, 밭농업직불제를 기본형으로 친환경, 경관보전, 조건 불리직불제를 선택형으로 통합 생산비 연계 방식으로 전환, 쌀변동직불제 단계적 폐지 의무준수 사항 이행

주 1) 강마야(2017),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과 예산구조 재편,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과 예산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자료.

- 2) 박준기·오내원·유찬희·김종인·박지연(2016), 농업직접지불제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3) 김태연·임정빈·이정환(2017), 농업의 존재이유 구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 시선집중 GSNJ 제234호, GSNJ Institute.
- 4) 이정환·권태진·김용택·김윤식·김태균·김태연·김한호·박성재·오현석·임정빈(2017), 신농업·신농정으로 가는 길, 시선집중 GSNJ 제241호, GSNJ Institute.
- 5) 김태훈·유찬희·정문수·오내원·박지연(2018), 공익형직불제 확대개편: 농업직불제 개편 세부 추진 방안, C-2018-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6)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2018),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방향과 실천 전략,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TF활동결과 발표 자료집,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료: 김태훈·유찬희·김종인, 공익직불제 어떻게 개편되나, 2020년 농업 및 농가경제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7쪽.

3. 개정된 직불제 법률

- 다양한 목적과 법률에 근거하여 운용되던 농업직불제를 주된 목적인 공익 증진으로 통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법률이 2019년 12월 27일에 국회를 통과하였음
 - 국회를 통과한 법률 명칭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증진직불법)이며 기존의 농업소득보전법을 전면 개정한 것임
 - 전체 법률은 9장 4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총칙과 제도 구성 및 적용대상’에 관하여 6개 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이하 기본직불) 관련 내용이 14개 조,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선택직불)를 규정한 것이 2개 조이며, 나머지 조항들은 심의위원회, 기금, 보칙, 벌칙에 관한 규정임
 - 공익증진직불법의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음
 - 공익증진직불법에 의한 직불제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란 표현을 넣어서 직불제의 목적이 소득 안정도 있으나 공익 직불제 개편에 일치하도록 공익기능 증진을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직불제의 기본 계획은 농식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운용 중인 직불제 중 6개를 기본직불과 선택직불로 통합하였음
 - 기본직불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이하 소농직불)과 면적직접지불(이하 면적직불)로 구성되었음
 - 직불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가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을 도입
 - 면적 비례방식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 면적직불은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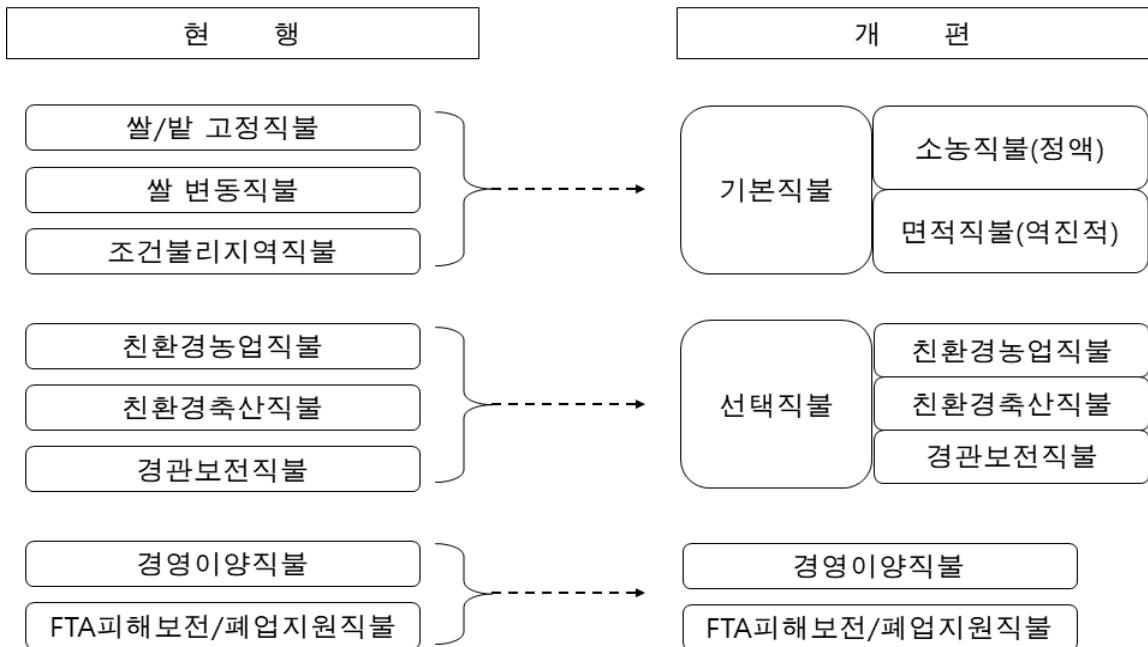
-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는 현재의 직불금 대상 농지 규정을 유지하되(쌀직불제 1998~2000년, 밭농업직불제 2012~2014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2003~ 2005년),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를 요건에 추가하였음
-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혹은 2016~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음
-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은 현재 쌀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의 지급 요건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 쌀 변동직불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의무가 유지되며, 공익 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의무를 새롭게 포함 하였음
-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 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가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선택직불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를 포함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불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선택직불금 지급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직불제 시행의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명예감시원으로 이·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편 법률은 공표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하고 있음

- 공익증진직불법에서 직불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법률의 목적을 제시한 내용으로 볼 때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직불제의 범위는 현재의 6개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친환경, 경관)를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향후 선택직불의 범위를 확대할 여지를 남겨 두었음
- 공익증진직불법에 근거한 직불제 개편 모습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 현행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기본직불로,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는 선택직불로 통합되었음
 - 경영이양직불제와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은 별도로 운영됨

〈표 III-2〉 직불제 개편 전과 후의 모습

개편 전		개편 후	
공 익 직 불 제	선택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논활용직불제	
	기본 직불제	면적직불금(역진적 단가)	
			소농직불금(정액)



〈그림 Ⅲ-1〉 법률에 근거한 직불제 개편 모습

- 공익증진직불법이 통과되면서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급 대상자는 2020년부터 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의 직불금을 받음(농업진흥지역 기준)
- 또한 농업·농촌 공익 기능 제고를 위한 준수의무가 확대되며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 도입으로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 기능이 확대됨(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
- 2020년 직불제 예산과 개편 법률을 토대로 세부 시행 방안 마련 시 검토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¹⁰⁾

1) 기본직불제

■ 소농직불제

10) 김태훈 외 2인, 공익직불제 어떻게 개편되나?, 2020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84~91쪽 요약.

- 소농직불은 일정 경영 규모 미만의 농가 중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기간, 소득조건 등의 요건을 충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직불 대신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 지금 대상은 농지 분할 등을 막기 위해 경영체 단위가 아닌 농가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개별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를 동일 농가로 간주(배우자 간의 경영체 분할 방지 목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농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도적인 농지 분할을 막을 필요가 있음
 - 소농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은 0.5ha, 1.0ha 등 여러 주장이 있으나 0.5ha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농가의 절반에 가까운 농가(대상농가 48만 여 농가로 전체의 44% 수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지금액은 소농직불 대상 농가가 기존에 수령하던 직불금보다 많아야 대농과 소농 간의 형평성 악화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최소한 과거 지급실적보다 많은 농기당 100만 원 이상(논 진흥면적 기준으로 2013~2017년 평균 지급실적은 0.5ha 기준 92만 원 수준)은 되어야 할 것임

■ 면적 직불제

- 현행 직불제는 면적 비례 방식으로 지급되어 직불금이 대농에 편중되고 중·소규모 농가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농지 규모에 따른 형평성 결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2017년 쌀직불금 지급액을 농지 규모별로 보면, 0.5ha 미만의 경영체 수는 전체의 44.7%에 달하지만, 직불금 수령액 비중은 8.0%에 그쳤으나, 6ha 이상 경영체 수는 전체의 1.9%에 불과하지만 직불금 수령 비중은 23.1%를 차지했음
-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쌀직불제에 비해 농지 규모별 직불금 수령액 차이가 크지 않으나 면적 비례 지급 방식으로 인해 농지 규모가 큰 경영체가 그 수는 적지만 수령액 기준으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동일하게 존재함
 -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소농직불을 도입하기 때문에 면적직불금 단가 차등구간을

여러 개로 설정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단가 설정 구간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면적직불 단가 구간 설정은 과거 쌀 전업농 육성정책의 목표였던 호당 6ha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조금 더 세분하면 평균 농업소득 대비 약 2배를 얻는 3ha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공익직불제

-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준수 사항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단가 수준도 직불금 수령액이 과거 지급 수준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제도 개편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2) 선택직불제

- 공익증진직불법에서는 선택직불을 2개 조(법률 제21조와 제22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가 이에 해당됨
 - 법률 제 21조 3항에서 ‘그 밖의 선택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취지에 일치하려면 현재의 공익형으로 분류되는 직불제의 개편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선택직불을 확대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직불제가 화학투입제의 감소를 위해 인증 중심으로 운용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경관보전직불제는 사업 내용이 경관작물 재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마을경관보전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사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농업경관의 보전과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 농촌경관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함
-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2012년 밭농업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실효성이 낮아졌으며 개편되는 직불제에서는 기본직불에 통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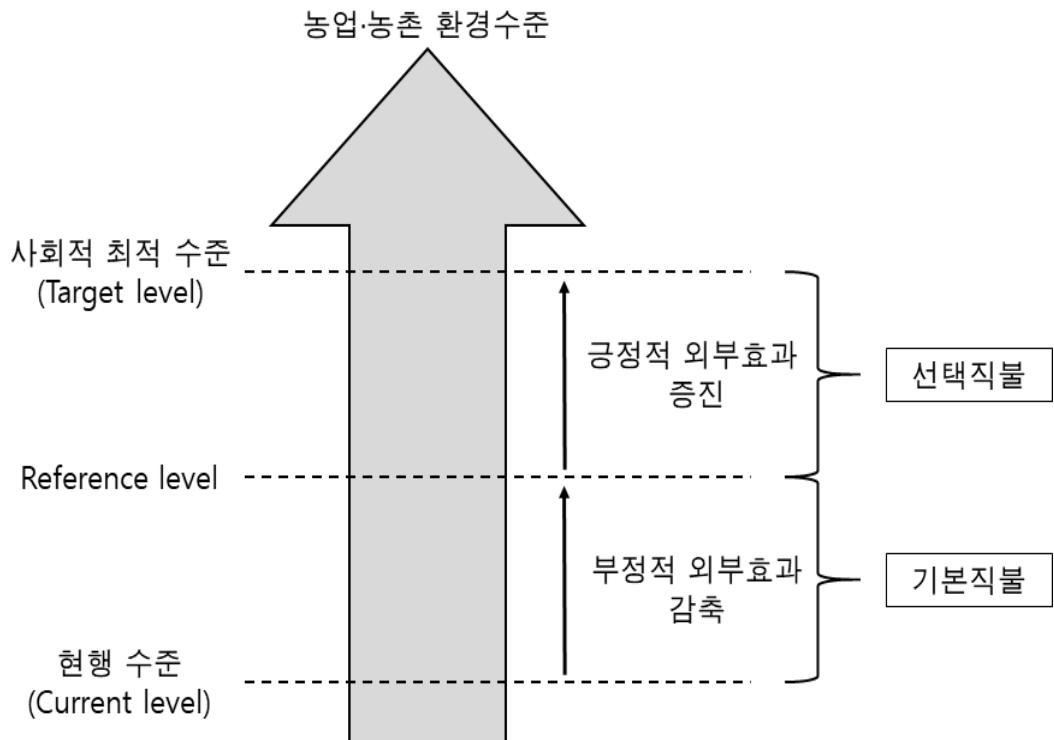
-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은 경사도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 조건 위주이고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지역 공동화의 억제와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도입된 당초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 지역(경제·사회 여건 등 대상 지역 지정 조건), 대상 농지(논 포함 여부), 마을공동기금의 규모, 기금 조성 방법, 공동활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선택직불의 유형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3) 준수 사항

- 기본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법률 제12조)은 쌀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 수령 조건(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이외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되었음
-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 (제12조 제4항)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준수사항을 설정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각각의 기준과 효과는 기본직불과 선택직불에 나누어 적용할 수 있음
 - 첫째, 영농활동 등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외부효과(역기능)를 줄이는 것으로 현행 수준을 준수기준(reference level)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며, 이 준수사항은 직불금을 받는 전국 농가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므로 기본직불에 적용됨
 - 법률 제12조에서 제시한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투입재 사용량 감축 외에도 준수사항을 강화 하여야 역기능을 실효성 있게 줄일 수 있을 것임
 - 둘째, 농업 부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려면 역기능을 줄이는 단계를 넘어 농업 부문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 외부효과(순기능)를 늘려야 하며, 준수

기준을 넘어서 사회적 최적 수준에 가깝게 공익 제공을 늘려야 함

- 역기능 감소와 달리 순기능 증대는 강제하기 어렵고 유인(incentive)을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선택직불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임
- 농업의 순기능을 늘리려면 지역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관계자가 스스로 참여하여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기본직불금 수령농가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이상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함



자료: 김태훈 외(2018). P. 40 수정.

〈그림 III-2〉 준수사항 설정과 기대효과

4) 모니터링

- 법률 제17조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사항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조사하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 등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을 명시하지는 않았음
 - 기본직불은 전국 수준에서 모든 직불금 수령자가 준수사항을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므로 표준화된 공통 준수사항을 설정하고 중앙정부에서 직불금 수령자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 타당함
 - 선택직불이 활동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 단위에서 활동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이행 점검도 지역 단위 주체가 수행하도록 설계하고 기반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음
 - 지역의 물적·인구학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지역 단위에서 우선 해결할 문제를 도출하고, 필요한 활동 중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지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지역별 활동 구성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임
 - 이행 점검 방식은 준수사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준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록 확인, 현장 실사,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기록 확인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구매와 사용 기록 등을 농가가 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록물을 확인하는 것이며 현장 실사는 농지 형상 유지 확인 등이 해당됨
 - 시료채취 및 분석은 기존의 변동직불금 준수사항 점검과 같이 토양 등 시료를 채취하여 연구실에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임
 -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한 이행점검은 단기적으로 검사 대상의 확대가 어려우므로 검사인력, 장비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
 - 제도 개편 초기에는 환경적으로 위험한 지역이나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음

○ 개편되는 직불금의 기본 틀은 현행 9개 직불제 가운데 쌀 고정, 쌀 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6개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통합하는 것임¹¹⁾

- 이중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은 기본 직불금으로, 친환경·경관보전 직불금은 선택직불금으로 구분하는 것 외에는 현행 제도의 틀이 유지됨
 - 기본직불금은 0.5㏊ 미만의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역진적 단가체계가 적용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됨
 - 선택직불금으로는 친환경·경관보전 직불금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직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농업생산환경·농촌생태환경·문화유산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11) 정용일, 공익직불제가 정착/발전하려면, 기명칼럼, 농민신문, 2020. 3. 9.

〈표 III-3〉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7개 항목

분야	준수사항
환경(6개)	화학비료 사용기준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지하수 이용기준
생태(3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때 신고
공동체(2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먹거리 안전(3개)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 허용기준
	기타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제도 기반(3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정부가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공익기능 향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영농활동을 하는 농가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

- 농가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의 17개 항목임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가 의무이며, 농지 소재지나 면적·경영형태·재배품목

등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다만 재배품목 변경신고는 올해 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됨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농가는 매년 직불금을 받기 전까지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 생태 보전을 위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하고, 이웃 농지와 구별이 되도록 경계를 만든 뒤 이를 관리해야 함
- 생태교란 생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해선 안 되며 방제대상 병해충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
- 환경보전을 위해 농약과 비료는 적정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하천수를 이용하거나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함
 -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버려서는 안되며, 농경지에는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해야 함
- 영농·생활 폐기물은 농지에 매립·소각해선 안 되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두어야 함
 - 영농활동을 매월 1회 이상 기록해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1건 위반하면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는데, 같은 준수사항을 2년 연속 어기면 20%, 3년 이상 어기면 40%를 감액하는데, 여러 건의 준수사항을 동시에 위반하면 직불금이 최대 100%까지 감액됨

○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면적직불금을 지급함

- 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르면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구분해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함
 - 구간별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논밭→비농업진흥지역 논→비농업진흥지역 밭’ 순으로 적용하고, 앞서 적용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이후 구간에 계단식으로 적용되며, 총 지급액은 해당 구간별 면적에 해당 구간별 단가를 곱한 액수의 합으로 산출됨

〈표 III-4〉 면적 직접지불금의 기본면적 구간별 단가

단위: 만원/ha

단계	구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①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205	197	189	
②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178	170	162	
③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134	117	100	

○ 사례: 농업진흥지역 논밭 4ha, 비진흥지역 논 3ha, 비진흥지역 밭 2ha일 경우, 모두 9ha의 논밭을 경작하고 있음

- 먼저 농업진흥지역 논밭 지급액을 산출하는데, 농업진흥지역 논밭 4ha 중 2ha는 1구간 단가를 적용함
 - 이 구간별 단가는 410만 원($2\text{ha} \times 205\text{만 원}$)(①)
 - 나머지 2ha엔 2구간 단가를 적용 이 구간별 단가는 394만 원($2\text{ha} \times 197\text{만 원}$)(②)
 - 농업진흥지역 논밭 4ha에 대한 지급액은 ‘①+②’인 804만 원이 됨(A)
- 다음으로 비농업진흥지역 논 3ha 중 2ha에 한해 2구간 단가를 적용함
 - 여기서 1구간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데, 앞서 농업진흥지역 논밭에서 1구간을 적용 했기 때문에 비농업진흥지역 논은 2구간부터 출발함
 - 또 농업진흥지역 논밭 4ha를 이미 적용했으므로 여기서는 2구간 한도인 6ha에서 4ha를 뺀 2ha에 대해서만 적용함
 - 이 구간별 단가는 340만 원($2\text{ha} \times 170\text{만 원}$)(③)
 - 비농업진흥지역 논 1ha는 3구간 단가가 적용돼 162만 원($1\text{ha} \times 162\text{만 원}$)(④)
 - 비농업진흥지역 논 3ha에 대한 지급액은 ‘③+④’인 502만 원이 됨(B)
- 세 번째 비농업진흥지역 밭은 앞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농업진흥지역 논이 각각 1구간, 2구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3구간부터 적용해야 함

- 비농업진흥지역 밭 2㏊에 대한 지급단가는 200만 원(2㏊ × 100만 원)(C)
- 이 사례의 최종 지급액은 ‘A+B+C’로, ‘804만 원+502만 원+200만 원=1,506만 원’이 됨

〈표 Ⅲ-5〉 농업진흥지역 논밭 4㏊, 비진흥지역 논 3㏊, 비진흥지역 밭 2㏊일 경우

단위:만원

구간별 경작면적	1구간 (2㏊ 이하)	2구간 (2㏊ 초과~6㏊이하)	3구간 (6㏊ 초과)	합계
농업진흥지역 논밭 4㏊	410(2㏊ × 205)	394(2㏊ × 197)	-	804(A)
비진흥 지역	논 3㏊	-	340(2㏊ × 170)	162(1㏊ × 162) 502(B)
	밭 2㏊	-	-	200(2㏊ × 100) 200(C)
총계				1,506

4. 개정된 시행령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음
 -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확정하였음
 - 공익직불제: 기본형공익직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 선택형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 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임
 -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 배우자, ②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③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 소농직불금은 0.5㏊ 이하를 경작하는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이 지급됨

〈표 III-6〉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①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②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③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함
 - 면적직불금 구간은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 3개 구간으로 나뉘게 됨
 - 면적지불제 단가
 - 농업진흥지역 단가는 논밭 구분 없이 2ha 이하는 1ha당 205만원, 2ha 초과~6ha 이하는 197만원, 6ha 초과~30ha 이하는 189만원임
 - 비진흥지역 논의 경우 2ha 이하는 178만원, 2ha 초과~6ha 이하는 170만원, 6ha 초과~30ha 이하는 162만원임
 - 비진흥지역 밭은 2ha 이하는 134만원, 2ha 초과~6ha 이하는 117만원, 6ha 초과~30ha 이하는 100만원임
 - 예컨대 비진흥지역에서 논농사 3ha를 짓는 농가는 526만원(2ha분 356만원 + 나머지 1ha분 170만원)을 받고, 비진흥지역에서 밭농사 3ha를 짓는 농가의 수령액은 385만원(2ha분 268만원 + 나머지 1ha분 117만원)임

〈표 III-7〉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지급대상 농지	산출식	수령액
사례①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 \times 205\text{만원}) + (1ha \times 197\text{만원})$	607만원
사례②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	$(2ha \times 205\text{만원}) + (1ha \times 197\text{만원}) + (1ha \times 170\text{만원})$	777만원
사례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	$(1ha \times 178\text{만원}) + (1ha \times 134\text{만원}) + (2ha \times 117\text{만원})$	546만원

-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환경보호와 생태보전 등을 위해 17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준수사항 1건을 위반하면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같은 준수사항을 2년 연속으로 어기면 20%를, 3년 이상 어기면 40%를 감액, 여러 건의 준수사항을 동시에 위반하면 감액률이 합산돼 최대 100%까지 감액됨

제IV장 충북 농업의 직불제 현황과 향후 과제

1. 충북의 직불제 현황

- 충북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는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 변동),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임

■ 쌀소득보전직불제

- 2005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쌀값이 하락될 때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를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 2020년을 기준으로 사업량은 43,762㏊, 사업 예산은 42,800백만원(국비 100%)으로,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지원단가는 평균 1,000천원/㏊(진흥 1,076, 비진흥 807)임
 - 1998년~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현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지원근거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임

〈표 IV-1〉 충북의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 지급 현황

구 분	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이전
농가수(호)	869,375	54,626	54,756	54,492	53,360	52,410	49,169	50,758	52,310	54,543	392,951
사업량(ha)	719,752	43,172	43,739	44,164	44,408	44,630	43,693	44,933	45,690	47,014	318,309
총사업비 (억원)	5,717	424	430	436	442	440	388	356	317	326	2,158

- 고정직불제는 쌀생산량과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단위면적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변동직불제는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이에 대한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함
- 농가당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은 변동직불금 단가(원/80kg)×생산단수(63가마/ha)×재배면적(ha)으로 산정함
 - 2018년~2019년 변동직불금 단가 산정(80kg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음
 - [(목표가격-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0.85]-고정 직불금 단가
 - 2018~2019년산 쌀은 214,000원/80kg으로 고정(법 제11조), 고정직불금 단가(2017년산)으로 15,873원/80kg(63가마/ha)임

〈표 IV-2〉 충북의 쌀고정직불제 지급 현황

연산별	농가수(호)	면적(ha)	지급액(백만원)	지급단가(원)	ha당 단가(천원)
2018년산	54,756	43,739	43,012	15,873	진흥1,076, 비진흥807
2017년산	54,492	44,164	43,563	15,873	진흥1,076, 비진흥807
2016년산	53,360	44,408	43,839	15,873	진흥1,076, 비진흥807
2015년산	52,410	44,630	43,950	15,873	진흥1,076, 비진흥807
2014년산	49,169	43,693	38,841	14,306	진흥970, 비진흥727
2013년산	50,758	44,933	35,611	12,713	진흥850, 비진흥680
2012년산	52,310	45,690	31,739	11,509	진흥746, 비진흥597
2011년산	54,543	47,014	32,636	11,495	진흥746, 비진흥597
2010년산	56,302	47,576	33,008	11,486	진흥746, 비진흥597
2009년산	57,542	47,752	33,382	11,536	진흥746, 비진흥597
2008년산	70,523	55,270	38,477	11,475	진흥746, 비진흥597
2007년산	70,677	56,056	38,801	11,475	진흥746, 비진흥597
2006년산	69,486	56,292	38,966	11,475	진흥746, 비진흥597
2005년산	68,397	55,347	33,093	9,836/80kg	진흥640, 비진흥512

〈표 IV-3〉 충북의 변동직불제 지급 현황

연산별	농가수(호)	면적(ha)	지급액(백만원)	80kg당 지급단가(원)	ha당 단가(원)
2018년산	-	-	-	-	-
2017년산	43,896	32,178	25,369	12,514	788,382
2016년산	44,810	33,568	70,844	33,499	2,110,437
2015년산	45,249	34,815	35,112	15,867	999,621
2014년산	43,297	34,959	9,307	4,226	266,238
2013년산	-	-	-	-	-
2012년산	-	-	-	-	-
2011년산	-	-	-	-	-
2010년산	52,588	40,699	38,699	15,588	950,868
2009년산	54,209	41,560	30,492	12,028	733,708
2008년산	-	-	-	-	-
2007년산	66,996	50,012	14,970	4,907	299,327
2006년산	66,371	51,213	23,545	7,537	459,757
2005년산	65,535	50,933	48,809	15,710	958,310

- 지원기준에 대한 완화 내용은 도시 거주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기준과 신규 진입의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아래의 표와 같음

〈표 IV-4〉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기준 완화 내역

구분	기준	변경
도시거주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0,000㎡ 이상 경지 농작 등록신청 연도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군에 두고, 해당 시군의 1,000㎡ 이상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0,000㎡ 이상 경지 농작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군에 두고, 해당 시군의 1,000㎡ 이상 농지를 직전 1년 이상 경작
신규 진입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대상 농지에서 2년 이상 10,000㎡ 이상 경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 이상(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농산물 판매액 1.2백만원 이상)

■ 조건불리직불제

- 200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 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0년을 기준으로 사업규모는 5,365㏊이며, 총사업비는 3,380백만원(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으로,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지원단가는 농지 650천원/㏊, 초지 400천원/㏊임
 - 지원근거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임

〈표 IV-5〉 충북의 조건불리직불제 지급 현황

구 분	계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까지
농 가 수(호)	147,958	7,353	7,583	8,216	8,902	9,974	10,702	10,095	10,378	10,883	63,872
사 업 량(㏊)	104,403	4,714	4,995	6,015	5,828	6,347	6,677	6,631	6,919	7,394	48,883
총사업비(억원)	490	31	29	29	29	32	33	33	34	37	203

- 조건불리지역 선정·고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고 조사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 5년을 주기로 농지전용·개간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 충북은 376개 법정리(경지면적 26,796㏊)가 해당되는데 2012~2016년 392개 법정리에서 2017~2021년까지 376개로 16개소가 감소될 예정이며, 법정리 경지면적은 2012~2016년 328,088㏊에서 2017~2021년까지 26,796㏊대로 1,292㏊가 감소될 예정임
- 마을공동기금 적립 의무는 2018년부터는 적립을 희망하는 마을만 자율적립으로 바뀌어 적립의무가 폐지되었으며, 기존 적립기금은 기금을 다 쓸 때까지 현행 사업지침서에서 규정한 용도대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함
 - 마음공동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냉·난방비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를 허용하였고, 행정비(인건비) 집행도 가능하고, 영화와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에도 쓸 수 있음
 - 마을 기금의 자율적 집행 가능금액은 2017년 100만 원에서 2018년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마을특산품, 가공품 개방 등을 연구용역비로도 사용이 가능함

■ 친환경농업직불제

- 1999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 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함
 - 2020년을 기준으로 사업량은 1,943㏊이며, 사업비는 14.43백만 원(국비)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 내의 농지(초지 포함) 중 현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마을공동 기금 조성을 지원함
 - 지원기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연속 및 불연속 생산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 연속 생산은 매년 지급하는 데 지급기간은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유기지속은 기한 없이 지급(2018년에 유기지속직불금 지급 기한이 폐지되었음)
 - 불연속 생산은 생산연도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유기지속은 기한 없이 지급함

- 지원단가는 농지 650천원/㏊이며, 초지 400천원/㏊이며, 지급 상한은 5㏊임
-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지기간은 당해 사업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내 인증이 유지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인증최소, 인증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조금을 회수함
- 지원근거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임

〈표 IV-6〉 충북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 현황

구 분	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까지
농가수 (호)	11,050	2,623	2,279	2,119	2,112	1,917			
사업량 (㏊)	27,462	1,792	1,441	1,336	1,328	1,267	966	1,201	18,131
총사업비 (억원)	151.29	13.63	10.05	8.65	8.81	9.05	6.3	7.9	86.9

■ 밭농업직불제

- 201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밭작물을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밭작물을 재배 농업인에게 주는 직불금임
 - 2020년을 기준으로 사업량은 28,415㏊이며, 사업비는 15.63백만 원(국비)으로,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농촌거주자는 농가당 0.1㏊ 이상 경작해야 하고, 도시거주자는 동일 시·군에 1㏊ 이상 농지를 경작하고, 농산물 판매액 9백만 원 이상이 해당됨
 - 지원단가는 평균 550천원/㏊(진흥지역 703, 비진흥지역 530), 논이모작 500천원/㏊임
 - 밭농업의 지급상한은 농업인 4㏊, 법인 10㏊이며, 논이모작은 농업인 30㏊, 법인은 50㏊임
 - 대상농지는 밭은 3개년(2012~2014)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휴경도 포함

되고, 논이모작은 3개년(1998~2000)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됨

- 지원근거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임

〈표 IV-7〉 충북의 밭농업직불제 지급 현황

구 분	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농가수 (호)	295,982	49,166	49,800	48,573	47,054	44,062	25,570	16,920	14,837
사업량 (㏊)	154,645	26,495	27,610	26,627	25,976	23,998	10,680	7,321	5,938
총사업비 (억원)	680	146	136	122	104	76	43	29	24

■ 시사점

- 직불제가 농업·농촌에 주는 영향은 많은 학자들이 분석으로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충북 농업에 대한 영향을 직접 분석한 논문은 없지만, 충북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충북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
- 이문화·김관수(2020)의 연구는 농가의 위험에 대한 태도(risk preferences)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wealth)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면, 생산 결정 또는 재배면적 결정에 부(wealth)가 영향을 줄 수 있다(Chavas 1990; Goodwin 2006)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쌀 농가의 자산(asset)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부의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분석하였음¹²⁾
 -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 쌀 농가에게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이 부의 자산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쌀 재배면적을 늘리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정직불금을 더 많이 받는 농가(논면적이 큰 농가)일수록 쌀 재배면적을 더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의 분산을 낮추는 안정화 효과가 존재하여 쌀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정책적으로 고정·변동직불금의 단가 인상과 같은 제도 개편은 일정 수준의 생산을

12) 이문화·김관수,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 실증분석, 농촌경제 43권 1호, 2020, 3. 1~20.

왜곡시키는 효과가 존재하고, 특히 목표가격이 존재하는 변동직불금의 생산왜곡 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제도 개편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이춘수·양승룡(2018)은 시장가격 급락 시 소득보전과 안정화 효과가 높지만, 수급 조절이 어렵고 가격 급락에 따른 정책비용 급증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쌀소득 보전직불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의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¹³⁾

- 첫째, 고정직불금만 지급하는 대안은 정책비용이 현행 제도와 변동직불금만 지급하는 대안에 비해 낮지만, 정책휴경을 실시하는 생산조정제와 생산조절형 직불제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 변동직불에 의한 소득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상황에서 농가소득 수준과 안정성이 가장 낮아 다른 대안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둘째, 변동직불금만 지급하는 대안의 경우 소득 안정성이 가장 높았으나, 재고 증가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재고관리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재고 증가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소득보전직불금도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대안임
- 셋째, 대안별 재고량 변화추이에서는 전체 경지면적의 10% 이상을 휴경하는 생산조절형 직불제 대안에서만 재고량이 감소하고, 생산조정제를 포함한 나머지 대안의 경우 모두 재고가 증가하였음
- 넷째, 생산조절형 직불제 운영 시 농가소득과 정책비용, 그리고 감시비용을 고려할 때 재배면적이 1.5ha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되며, 휴경직불금 수준이 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농가와 정부가 과잉공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변동직불 단가의 50% 수준으로 휴경직불금을 책정하는 방식이 적합함

- 임청룡·정호승·임성수·정원호(2018)는 소득보전형 직불제가 농가유형별로 소득증대 및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소득효과와 관련하여 농업소득 증대 및 안정, 소득형평성, 경영안정성, 그리고 농가소득의 안전망 효과를 검토 하였음¹⁴⁾

13) 이춘수·양승룡. 생산조절형 쌀소득보전직불제 효과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5권 2호. 2018, 175~196쪽.

- 농가경제조사 1개 패널(2008~2012년)을 기초로 쌀 직불금이 미곡농가의 농업 소득 지지 및 안정, 소득형평성, 그리고 농업경영에 기여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농가유형별로 보면 전문농, 예비전문농의 경우 변동직불금이 기여한 효과가 고정 직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은퇴농과 고령농은 고정직불금의 효과를 더 크게 누린 것으로 보였음
 - 쌀 직불금은 농업경영과 농가소득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쌀 직불금을 제외할 경우 일반농의 약 16~28%가 경영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은퇴농의 약 5~16%가 쌀직불금을 통해 경영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하였음
 - 쌀 직불금이 없을 경우 은퇴농과 고령농의 약 1~3%는 최저생계비나 가계소비지출 조차도 감당 못하는 농가로 하락할 수 있으므로 농가경제조사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적어도 고령농, 은퇴농, 일반농에 대해서는 쌀 직불금(특히, 고정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업경영 및 소득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농업경영체 DB 자료(2014~2015년)를 기초로 쌀 직불금의 농업소득 증대 및 안정과 소득형평성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쌀 직불금의 경우 모든 농가유형에 걸쳐 고정직불금이 기여한 효과가 변동직불금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음
 - 쌀 직불제가 농가소득의 안전망 역할을 하였고, 특히 쌀 고정직불금의 역할이 크게 나타났으며, 직불금이 없을 경우 은퇴농, 고령농, 일반농이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로 전락하는 비율은 각각 3.45%, 2.44%, 1.99%로 추정되었음
 - 따라서 농가경제조사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적어도 은퇴농, 고령농, 일반농에 대해서는 고정직불금의 지급이 농업경영 및 소득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됨

○ 강마야·이관률(2015)의 연구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¹⁵⁾

- 첫째 농업직불금 제도의 명칭부터 쌀고정직불을 제외하고는 정책인지도가 매우 낮았고, 국가가 농업직불금 제도를 왜 시행하는지 정책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14) 임청룡·정호승·임성수·정원호, 농가유형별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소득효과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5권 3호, 2018, 567~588쪽.

15) 강마야·이관률, 농업직불금 제도의 정책구조와 집행분석: 충남지역을 사례로. 농촌사회 25(2). 한국농촌사회학회. 2015, 142~185쪽.

부족하였음

- 농업직불금 제도의 개념을 주로 소득보전에 초점을 맞춘 협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고, 조건불리직불의 경우 지리적 여건이 불편한 조건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제도의 명칭, 개념 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였음
 - 친환경농업직불의 경우, 생산비용보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개념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었음
 - 둘째, 경관보전직불은 경관보전활동을 통한 토양의 지력증진 환경 및 생태보호 품질향상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 부수적으로 참여농가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희망 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였음
 - 경영이양직불은 농사를 포기하고 싶었으나 소득원 부재로 불안할 수 있는 농가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음.
- 쌀고정직불의 경우 직불금 수령과 농사포기 임차료 간에는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차료가 인상되면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이 낫고 임차료가 인하되면 직불금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음
- 직불금 수령액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는데, 매년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동일한 수준으로 현장체감도와 만족도는 낮은 편임
 - 조건불리직불은 크지 않은 금액으로써 소득수준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에 대체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임
- 친환경농업직불은 경영비를 보상받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편이라서 큰 도움이 안 되지만 다른 직불금과 달리 금액수준보다는 다른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음
- 친환경농업인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설계가 필요한데 현재의 제도와 같은 지원정책으로 인해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는 구조적 모순점을 지적하였음

2. 충북 농업의 향후 과제

1) 충남의 사례

- 우리나라 농업직불금 제도의 정책구조를 분석하고 충남지역을 사례로 하여 농업 직불금의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¹⁶⁾
 - 첫째 농업직불금 제도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협의 개념의 소득보전형 직불제를 지향하고 있어서 형식 측면과 내용 측면이 상충됨
 - 동일한 직불제 내에서도 협의 개념의 목적과 광의 개념의 목적이 서로 혼재되어 있고, 농업직불금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 간 논리적 연관성이 필요한데 제도의 개념 목적 성과지표가 서로 불일치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함
 - 충남지역의 사례를 적용해 보면 정책수혜자는 쌀고정직불을 제외하고는 정책 인지도가 거의 없었고, 국가가 농업직불금 제도를 시행하는 정책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였음
 - 농업직불금 제도의 개념을 주로 소득보전에 초점을 맞춘 협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홍보와 교육활동으로 정책의 목적을 제대로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농업직불금 제도의 지원기준 자체가 전부 ha 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직불금 수혜규모가 면적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임
 - 쌀고정직불의 지급기준에서 상한면적은 있으나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이 1.6ha인 것을 보면 실효성이 없는 수준이므로 대규모 농가와 소규모 농가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급기준 재설정이 필요함
 - 전체 농업직불금 예산의 71.5%, 결산의 76.3%를 차지하는 쌀고정직불로 편중된 구조를 개선해야 함

16) 강마야·이관률. 농업직불금 제도의 정책구조와 집행분석: 충남지역을 사례로. *농촌사회* 25(2). 한국농촌사회학회. 2015, 142~185쪽.

- 셋째, 농업직불금 제도는 경영이양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을 제외하고 지원상한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지급되는 구조인데, 집행주체에 있어서 경영이양직불 및 친환경농업직불의 경우는 이원화된 관리체계 개별 농업직불금 제도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서 제도의 종합적인 접근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임
 - 충남지역의 사례를 적용해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는 가시적 성과도 있지만 이원화된 관리감독 체계, 신청서류 준비의 어려움과 복잡한 절차, 제한적인 지급기준, 지원대상, 지원품목, 직불금과 지대간 연관성, 집행실태에 대한 무관심, 관리기관 인력의 전문성 부족, 상한 기간설정으로 인한 효과 반감과 상호준수조건 미이행 등을 지적하고 있음
- 넷째, 농업직불금 제도의 정책성과 측면을 살펴본 결과 특정품목 중심의 편중된 구조이고 밭농업직불조건불리직불친환경농업직불이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음
 - 정책목적과 성과지표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으로 인해 농업직불금 제도가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든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음
 - 충남지역의 사례를 적용해 보면 대체적으로 낮은 수령액으로 인한 체감도 및 만족도가 미흡함¹⁷⁾
 - 농업인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준수 의무조건의 이행 환경보호 중요성에 대한 가치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다섯째, 농업직불금 대부분의 제도가 통제수단이 없고 만족도 조사로 대체하는 사후평가를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은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임
 - 1년 단위의 예산집행구조로 실질적인 통제수단과 성과 및 사후관리가 불필요한 구조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장기적으로 정책성과를 높이려면 실질적인 통제수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7) 일부 지역에서는 경관 및 환경 개선과 품질 향상, 참여농가의 소득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지만 농사를 짓는 것이 직불금 수령보다 낫다는 생각이 많아서 신청자가 적은 현상, 적은 예산규모로 인한 체감도 저하, 제한된 지원기준과 품목설정으로 인해 정책 실효성에 의문 제기,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직불금 규모, 직불금 수령액에 대한 낮은 기대치, 직불금을 비롯한 보조 지원으로 인한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여섯째, 농업직불금 제도의 수혜는 동일 필지에 대한 ~~충복수혜불가의~~ 수급조건과 한정된 예산 내에서 다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직불금 규모가 작은 구조, 가급적 정책지원을 지향하도록 설계된 상호배타적 수급구조로 인해 제도 내부에 장벽이 존재함
 - 농가차원에서는 다수의 농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추가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써 농업직불금이 농가소득 기여와 공익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면 농가가 지금보다 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업직불금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 충북의 과제

- 공익직불제의 세부 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공익증진 기여 지불 방식으로 직불제를 전면 개편해야 함
 -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역할을 확대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
 - 기존 직불제가 대규모 농가에 지원 집중, 쌀 편중 지원에 따른 공급과잉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 농산물 안전성 확보, 자원 및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롭게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고, 관련 법과 2조 4,000억 원의 재정 투입금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시행함
 - 공익직불제는 기본형직불(소농지불 및 면적지불)과 선택형지불(경관직불, 친환경 직불)로 구성됨
- 공익직불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세부제도 마련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구축해야 함
 -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소농지불의 합리적인 지급 방식 설계
 - 경지면적 기준 지불에 따른 대농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 농가에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지불 방식을 도입함
 - 지급 대상 소농의 범위 설정, 지급 규모의 합리성 확보, 경지면적 분할(속칭 쪼개기)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실효성 있는 교차준수사항 마련 및 농가의 적극적 실천
 - 공익직불제는 기본적으로 농가의 공익증진 기여에 대한 보상이므로 농가가 영농 활동 과정에서 환경 및 자원 보존과 관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정부는 농가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고 모니터링 가능한 교차준수 사항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농가는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공익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함
- 농업·농촌의 공익증진 역할 제고를 위한 선택형 직불제 세부사업의 적극적 발굴 및 도입
 - 공익직불제로의 전면개편은 농업의 공익증진 역할에 대한 ‘기여 보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정책 방향 전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수준을 넘어서 물·토양 등의 환경 보전, 환경친화적 농법 적용 등을 견인할 수 있는 선택형 직불제 세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입해야 함

○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농가의 쌀 가격 불안정 우려 해소 필요

-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현상 해소를 위해 쌀 이외 곡물 및 조사료 등으로의 전환을 통한 쌀 수급안정은 물론이며, 곡물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
 - 수확기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한 자동시장격리 방식 등 지원제도는 마련하되,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단체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농업직불제의 전면적 개편 시도는 몇 차례 있었으며 특히 2010년 전후 직불제 개편과 농가단위소득안정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완결되지 못하였음

- 당시 농업·농촌 분야의 공익 제고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농정의 방향이 생산성, 효율성을 강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음

-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농가의 자율성과 시장 기능이 제고되지만 농가입장에서는 수급 및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음
- 특히 변동직불제가 기본직불에 통합되면서 쌀 농가의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직불제 개편의 연착륙을 위해 경영 안정을 위한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개편된 직불제는 기본직불 중심이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은 선택적 직불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 현재는 기반 부족, 예산 제약 등으로 일시에 선택직불이 확대되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선택직불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택직불의 추진 방안과 직불제 운용의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함
- 공익증진직불법 의결과 예산 증액으로 공익직불제 개편의 전기가 마련되었으나 농업 분야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맞게 다른 농정 수단의 조정도 필요함
 - 또한 공익직불제 개편을 위한 추진 체계와 기초통계, 농업인 교육 등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5년마다 직불제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

제V장 결론

- 그동안 농업직불제의 개편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었으나 농정의 방향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심이었기에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농정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직불제 개편이 이루어졌음
-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쓰여진 노력과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므로 농업소득 증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¹⁸⁾
-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농가의 자율성과 시장 기능이 강화되지만, 농가로 보면 수급 및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고, 변동직불제가 기본직불에 통합되어 쌀 농가의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우려가 있어 경영안정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임(김태훈 외 2인, 2020)
- 공익형 직불제는 농가소득 수단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 생태, 경관 등 비시장재(non-market goods and service)가 농업생산 과정에서 적절히 생성 되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함(이정환, 2019)
- 농업 생산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긍정적·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부정적 기능을 적게 발생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 다원적 기능의 관점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역할과 현행 직불제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 간 괴리가 존재

18) 이정환, (수정판)공익형 직불제: 기대 그러나 한계, 시선집중 GSnJ(265), 2019, 9쪽.

하고 있음(이상훈, 2019)

- 향후 과제로서는 쌀농가의 경영안정장치 마련과 형평성 제고 문제, 소비자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 제고 노력, 그리고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충북의 입장에서는 기본직불제가 보전 또는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선택형직불제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강마야·이관률. 농업직불금 제도의 정책구조와 집행분석: 충남지역을 사례로. *농촌 사회* 25(2). 한국농촌사회학회. 2015.
- 김관수·안동환·민선형. 직불제의 성과 평가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12.
- 김태연·배민식. 공익형 직불제의 의의와 과제. *계간농정* 69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 김태훈·김선웅·김종인·박지연.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 김태훈·유찬희·김종인. 공익직불제 어떻게 개편되나?. *농업전망* 2020(1). 2020.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이양직불제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 박성재 외 4인. 농업보조금 개편 방안 연구 쟁점 및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11.
- 유찬희·박준기·김종인, 박지연.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 이명기 외. 2020년 10대 농정이슈. *농정포커스* 제8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 이문호·김관수.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 실증분석. *농촌경제* 43권 1호. 2020. 3.
- 이정환. 농정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 할 길. *시선집중 GSNJ(260)*. 2019.
- 이정환. (수정판)공익형 직불제: 기대 그러나 한계. *시선집중 GSNJ(265)*. 2019.
- 이정환·사공용. 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제, 정당성과 현실성이 있는가?. *시선집중 GS&J 인스티튜트*. 2011.

- 이춘수·양승룡. 생산조절형 쌀소득보전직불제 효과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5권 2호. 2018.
- 임청룡·정호승·임성수·정원호. 농가유형별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소득효과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5권 3호. 201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17. 2020. 4. 27.

부록

부록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3.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밭농업"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5.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초지"란 「초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토지를 말한다.
7.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 ③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기본직접지불제도"라 한다)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선택직접지불제도"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6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과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종단된 경우

- 나.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태풍이나 홍수 등「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 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 나.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태풍이나 홍수 등「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 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2. 「농지법」 제34조 ·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 · 신고 · 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지법」 제36조 · 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 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한정한다)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 허가 ·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5.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이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서의 제한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 · 지역 · 단지의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휴경 중인 농지등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 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 면적이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 나. 등록신청연도 직전 최근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제10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농가의 구성원(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법인은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다만,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각각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4.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본문의 면적을 초과하거나 제1항제1호 단서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농가 중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액의 합이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단가 보다 낮은 경우 지급대상자로 하여금 소농직접지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소농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면적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작목 선정, 부과 절차 및 방법, 통보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

제14조(등록신청 및 공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2.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 ②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등을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 ① 읍·면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자(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농지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등의 소유·거래 및 휴경 등 등록사항(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수거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수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농자재판매처, 출하처 등에 출입하여 조사·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8조에서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입회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등에 있어서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한 자를 이 조 및 제18조에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2.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9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제12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제1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제10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그 농가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등록된 모든 농지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농지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부당이득금, 제2항의 제재부가금 또는 제3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에 관한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방법과 절차, 환수 및 지급제한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제23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단가체계,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환경부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5명 이내
 - 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
 -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 5명 이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제25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27조(차입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조성·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 및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33조(기금 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제2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제35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적정성,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 처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처리·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2.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등록·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지도 등의 의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 · 감독 ·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이 · 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 · 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 · 지도 · 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부위원장은 포함한다)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3.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한 자
3.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에게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부 칙〈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는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2018년산 및 2019년산 쌀까지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쌀 10킬로그램당 26,750원 (쌀 80킬로그램당 214,0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2019년산 변동직접지불금은 이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지급한다.

[시행일 : 2019. 12. 31.] 제4조

제5조(기금의 폐지 및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은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잔여액은 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이입조치한다.

제6조(등록제한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제한 조치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등을 적용받은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8조(별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②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록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4호, 2020. 5. 12.,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 가. 농업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장에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이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 농촌에 주소를 둔 농업인

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5.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 이 경우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에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가. 농업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나. 농업법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제3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① 법 제9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매매 · 상속 · 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①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2.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 · 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②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농경지의 유기·무기물질 및 화학성분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비료량 기준: 작물과 토양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정하는 비료량 기준

제6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교육 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기관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5조, 영 별표 3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

제10조(등록신청의 공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의 게시판을 말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제외한다)의 기간은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부터 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제11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내에서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의 구성원 중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1.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 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라. 법 제9조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

마.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 · 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 · 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이하 "관내경작자"라 한다)인 경우: 1)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이하 "경작사실확인서"라 한다).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 · 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 · 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

는 때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으로 한정한다)
 -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한다)
 -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한다)
 -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 6) 그 밖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 나. 관내경작자 외의 자인 경우: 가목1)의 서류와 가목2)부터 6)까지의 서류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소농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영 제4조·제7조에 따른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가. 영 제4조에 따른 농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 나.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라.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마.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및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바.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인이 직전 연도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1.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한 농지등 외에 추가로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없는 경우: 제2항제1호의 서류
 2.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제2항제2호가목의 서류 중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제2조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거나 등록신청한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서 주소지

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제2호가목의 서류 중 제2조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영 제5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제3호의 서류

가. 등록신청인과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의 주소지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같은 경우

나.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이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같은 때에는 등록신청한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거나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관내경작자 외의 자로 등록한 이후 주소지를 등록신청대상 농지등 소재지로 이동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

제12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면·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농지등 소재지의 읍·면·동 관할 통·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조사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3.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면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조사결과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이하 "등록거부 통보서"라 한다)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6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등록사항을 말한다.

1.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소재지·소유자 등 농지등
2. 농지등의 자경(自耕)·임차(貸借)·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등 농업현황
3. 농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재배현황
4.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 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 다만,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만 첨부해도 된다.

다. 영 제7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를 신고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⑤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조사계획의 수립·통보)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시장·군수·구청장등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서류의 보관·비치 의무)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5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4.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서류, 종자·육묘 등의 구매서류, 교육 이수증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 및 등록·변경등록과 관련된 서류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비치해야 한다.

제20조(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2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21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제24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30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제25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제2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영 제36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 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의 농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농공단지의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등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등

제2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등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해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한다.

제29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영 제39조에 따른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대상 마을대표 및 주민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 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등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통지

서로 읍·면장,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제4절 논활용직접지불제도

제32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영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영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 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 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의 농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5.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농지
6.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제33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영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인등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농지가 같은 시·군·구에 있는 경우: 1천제곱 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등
2. 농업인등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와 농지가 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인이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법인
3.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제34조(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1. 해당 농지가 영 제43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경작사실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제3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5조(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이하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관할 통·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를 대표하고,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읍·면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8조(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업

경영정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하는 서류

2. 제34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의 서류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영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39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제5장 보ち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동(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정보

가.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2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영 제30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의 제출을 마감한 날

마. 논활용직접지불금: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가.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2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영 제3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마. 논활용직접지불금: 영 제49조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와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 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선정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지도·홍보 및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신고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을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제26조·제33조·제41조·제5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선정·등록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거나 조사·수사 중인 경우

4.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신청 및 지급대상자 등록을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의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례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4호, 2020. 5.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640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3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5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의 앞쪽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16조·제24조 및 제40조의 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24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7조·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③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제1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④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⑤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9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 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

▣ 별지 제174호서식 중 "직접 소득보조금"을 각각 "직접 소득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이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제4조 관련)

[별표 2]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8조 관련)

[별표 3]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4]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23조 관련)

[별표 5]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26조 관련)

[별표 6]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31조 관련)

[별표 7]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제3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별지 제3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별지 제4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별지 제5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조사 공무원증

[별지 제10호서식] 조사원증

[별지 제11호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2020 기본과제

직불제 개정에 따른 충북 농업의 영향 분석

발행인 | 정 초 시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충북연구원

전화 043-220-1107 팩스 043-220-1199

285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번지(문화동 15)

ISBN | 978-89-6455-490-6 93520

* 본 출판물의 판권은 충북연구원에 속합니다.

* 본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2020년도 기본과제 본보고서의 전문은
충북연구원 홈페이지(www.cri.re.kr)를 참고바랍니다.



285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문화동15)
TEL : 043) 220-1107 FAX : 043) 220-1199 www.cri.re.kr

